

결 정 서

사 건 : 2015-215 직위해제 무효확인 및 직위부여 거부처분 취소 청구

청 구 인 : 성명 [REDACTED]

소속 [REDACTED]대학교 직위 교수

피청구인 : [REDACTED]대학교총장

심 사 일 : 2015. 5. 27.

결 정 일 : 2015. 5. 27.

피청구인이 2013. 10. 7. 청구인에게 한 직위해제처분과 2015. 3. 13. 및 2015. 4. 3. 청구인에게 한 직위부여 거부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2015. 4. 9. 이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청구를 하여 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청구인의 주위적 청구를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사유

<직위해제 처분>

형사사건으로 구속 기소되어 교육, 학생지도, 연구 및 진료 등 교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음을 이유로,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제3호 및 정관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에 처함(총장 명의의 2013. 10. 7.자



직위해제 처분)

<직위부여 거부처분>

대법원의 최종 판결 결과에 따라 행정처리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람(외과학교실 주임교수의 요청에 대한 의과대학장 명의의 2015. 3. 13.자 공문)

의과대학 및 의료원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며, 본부의 의사결정절차에 시간이 필요한 상황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람(교무처장이 2015. 4. 3. 청구인에게 보낸 회신)

2. 청구인 주장

가. 사건의 발단

검찰은 윤○○에 대한 형집행정지 처분이 언론보도로 국민적 공분을 얻자, 청구인에 대한 무리한 수사 및 기소로 그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였다.

나. 직위해제의 절차적 요건 흠결

피청구인은 소청외 최○○(형사소송의 대리인)에게 처분사유서를 송부하였을 뿐, 청구인에게 직접 문서를 교부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한 송달을 동의받은 사실이 없는바, 이 사건 직위해제 처분은 적법한 송달을 흠결하여 무효이다.

다. 직위부여 거부처분의 존재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직위부여 요청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을 회피하여 왔고, 의과대학장 및 교무처장 명의의 회신 역시 피청구인에게 그 법률효과가 귀속되는 것이므로, 이를 사유로 처분의 부존재를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라. 직위부여 거부처분은 위법

청구인은 2심 판결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아 직위해제 사유가 소멸하였고, 징계시효 도과로 징계 전심절차로서 직위해제를 하여야 할 필요도



없다. 피청구인은 아무런 정당한 사유 없이 청구인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을 장기간 지속하고 있는바,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인의 직위부여 요청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3. 판 단

가. 사건경과

1) 청구인은 2013. 9. 16. 윤○○ 환자가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2008. 10. 14, 2010. 7. 8., 2012. 11. 29. 세차례 허위진단서를 작성하였고, 2011. 8. 9. 미화 1만달러를 교부받았다는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

2) 피청구인은 2013. 10. 7. 청구인에 대해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제3호 요건(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의 직위해제 처분을 하였다.

3)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14. 2. 7. 청구인에 대한 기소사실 중 배임수재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일부 허위진단서 작성 및 동행사에 대해 징역8월을 선고하였다(2013고합269 판결).

4) 서울고등법원은 2014. 10. 30. 청구인에 대해 허위진단서 작성 및 동행사의 죄¹⁾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였다(2014노616 판결, 상고심 진행중).

5) 의과학교실 주임교수는 2015. 1. 21. 의과대학장에게 청구인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의 해제 심의를 요청하였고, 의과대학장은 2015. 3. 13. 이에 대해 대법원의 최종 판결 이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6) 청구인은 2015. 3. 23. 피청구인에게 직위해제의 무효확인 및 직위부여를 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교무처장은 2015. 4. 3. 이에 대해 회신하였다.

7) 청구인은 2015. 4. 9.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직위해제 처분의 무효확인 및 직위부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다.

나.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1) 허위진단서 작성 및 동행사의 죄(① 2008. 10. 14. ② 2010. 7. 8. ③ 2012. 11. 29.) 가운데 ②의 진단서 작성 및 동행사 행위만 유죄로 인정됨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13. 10. 7.자 직위해제 처분이 청구인에 대해 적법한 처분사유서 송달이 없어 무효이고, 처분이 있음을 안 것은 2014. 12. 5. 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소청심사는 징계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것인지 무효를 확인하는 것인지를 구별하지 않고 그 처분이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는 것이고, 가사 청구인의 주장처럼 처분이 있음을 안날이 2014. 12. 5. 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무효확인 청구는 청구기간을 초과하여 부적법하다(서울행정법원 2011. 11. 3. 선고 2011구합20659 판결).

다.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1) 직위부여 거부처분의 존부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에 따라 직위해제 처분의 처분권자는 임면권자이고, 청구인에게 회신한 의과대학장, 교무처장 등은 처분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의과대학장과 교무처장 등이 실질적으로 임면권자를 대신하여 직위부여 거부처분을 통보한 것으로 받아들일 여지가 있다는 점, 청구인이 임면권을 위임받은 총장에게 직위부여에 관련된 회신을 요청하고, 답신이 없을 경우 교무처장과 의과대학장의 회신에 따라 직위부여 거부로 받아들일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피청구인이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 할 때, 직위부여 거부처분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직위부여 처분의 신청권 유무

가)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7조는 교원소청심사의 대상을 ‘각급학교 교원의 징계와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으로 규정하고 있고, 판례에 의하면 신청에 따른 거부행위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려면 신청자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두20638 판결 참조).

나) 직위해제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이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잠정적으로 행하는 보직의 해제로써, 그 사유가 소멸하면 원칙적으로 그 효력이 상실된



다고 할 것이다.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2항 및 정관 제48조 제2항은 직위 해제 사유가 소멸된 경우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피 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직위해제 사유가 소멸하였음에도 부당하게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다는 전제하에, 청구인에게 직위부여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 될 것이다.

다) 청구인은 2014. 10. 30. 항소심에서 검찰의 기소혐의 대부분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고,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구속된 상태에 있지도 않으므로, 더 이상 직위해제를 유지할 사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에 대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기소된 범죄로 실제 유죄판결을 받을 것을 직위해제의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고, 이를 직위해제의 효력 유지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도 않다는 점, 청구인이 직위해제의 유지가 위법하다는 근거로 삼고 있는 판례는 처분 당시의 직위해제 요건에 대한 것으로, 직위해제 처분이 적법하게 성립되었다면, 사후적 사정변경을 사유로 그 처분이 위법하다거나 무효라고 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의 행위에 대해 일반국민은 그 진위여부와 무관히 직무수행의 공정성에 대해 상당한 의심을 가질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할 때 청구인에 대한 직위해제사유가 해소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또한 청구인에 대한 기소 상태가 유지되고 있고, 위 형사사건이 청구인과 검사의 상고에 따라 대법원에서 계속 중인 이상, 청구인에 대한 직위해제 사유가 확정적으로 소멸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서울행정법원 2015. 4. 2. 선고 2014구합57775 판결), 일반국민이 갖는 공정한 직무수행에 대한 의심 역시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3) 그렇다면 청구인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은 그 요건을 충족한 적법한 처분이었다 할 것이고 직위해제 사유가 확정적으로 소멸한 것도 아니므로 직위부여 거부처분에 어떠한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 할 수 없다.



4. 결 론

이 사건 청구인의 주위적 청구는 청구기간을 초과하여 각하하기로 하고, 예비적 청구인 직위부여 거부처분 취소청구는 직위해제 사유가 소멸하지 않아 거부처분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 5. 27.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성삼제 성삼제

상임위원 류정섭 류정섭

위원 고영현 고영현

위원 양일선(불참)

위원 김동춘 김동춘

위원 김경배 김경배

위원 문영기(불참)

위원 박범덕 박범덕



위 정본임.

2015. 6. 11.

교원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